



재해개요

- 2021. 09. 17.(금) 14:55경 경기도 □□시 소재 ○○○현장에서, △△건설 소속 재해자가 지상 8층 승강기 전실 창호 콘크리트면 견출작업을 하던 중 약 25.5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



재해발생 원인

- **불안전한 상태로 방호조치 된 개구부**
 - 승강기 전실에 있는 창호 개구부에 안전난간 형태로 설치된 수직보호망은 수직형 추락방망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(높이, 지지강도, 사양 등)로 설치하여, 재해자가 말비계로 창호 견출작업 시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노출된 개구부로 추락
- **추락 위험작업 관리감독 미흡**
 - 견출작업자의 안전대 착용, 안전한 말비계 작업방법 준수 여부 확인 등 추락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



재해예방 대책

- **개구부 방호조치 철저**
 -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, 울타리,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요건에 충족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
- **관리감독 및 안전교육 강화**
 - 말비계를 이용한 견출작업 시 추락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말비계 작업방법, 보호구 착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철저한 안전교육 및 해당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

※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·직영·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